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관련 안내사항 통보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외수입(잡수입)은 시·도 관리규약 준칙 및 이에 따른 단지별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므로 당해연도가 아닌 차년도 관리비로 차감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 회계처리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잡수입)은 아래 ①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②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가능하오니 이를 안내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당해연도 관리비 차감에 사용되어 관리비 상승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 사용 방법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 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경기도지사(공동주택과장), 강원도지사(건축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주무관 **변지형** 서기관 **전상억**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유리** 전결 2018. 2. 28.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1444 (2018. 2. 2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주택건설공급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71 팩스번호 044-201-5684 / kbjh486@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